##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416

발의연월일: 2024. 8. 30.

발 의 자: 송옥주・이병진・박 정

이수진 • 한민수 • 김준혁

이광희 • 권칠승 • 한정애

박해철 · 황명선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

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사용 기준을 정하면서, 업종별 수산 업협동조합의 경우 명칭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지방자치단 체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반면,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명칭에 수산업 가 공업명을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사 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있음.

한편,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인 지구별 수산 업협동조합의 경우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 록 하고 있으나, 여성어업인의 조합 경영 참여를 증대하고 여성어업인 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여성 임원 비율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#### 주요내용

- 가.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 사용 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 조제1항제3호 후단 신설).
- 나. 1명 이상의 여성이사를 반드시 선출하여야 하는 지구별 수산업협 동조합의 범위를 현행 여성조합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조합 에서 100분의 20 이상인 조합으로 확대함(안 제46조제8항 단서).

#### 법률 제 호

##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3호 중 "사용할 것"을 "사용할 것."으로 하고,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.

제46조제8항 단서 중 "100분의 30"을 "100분의 20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사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) 제46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(제10 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출하는 이사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조(명칭) ① 조합 및 중앙회는	제3조(명칭) ①		
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명			
칭을 사용하여야 한다.			
1. • 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		
3.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	3		
은 수산물가공업명을 붙인 수			
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<u>사용</u>	<u>사용</u>		
할 것 <후단 신설>	할 것. 이 경우 주된 사무소의		
	소재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		
	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		
	<u>다.</u>		
4. (생략)	4. (현행과 같음)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	
제46조(임원의 정수 및 선출) ①	제46조(임원의 정수 및 선출) ①		
~ ⑦ (생 략)	~ ⑦ (현행과 같음)		
⑧ 지구별수협은 이사 정수의	8		
5분의 1 이상을 여성조합원에			
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			
다. 다만, 여성조합원이 전체			
조합원의 <u>100분의 30</u> 이상인	<u>100분의 20</u>		
지구별수협은 이사 중 1명 이			
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			
하여야 한다.			

⑨ (생 략)

⑨ (현행과 같음)